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2021.6. 17.(목) 석간	배포	

책임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은주(02-2100-1730)	담당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1741)
			유미리 사무관 (02-2100-1737)

제 목 : 「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」 입법예고(6.17.~7.26.)

<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① **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**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.
 -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
 -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
- ② **조문 정비**를 통해 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

1. 추진배경

- 관계부처 차관회의('21.5.28.)에서 결정한 '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'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.

2.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가.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(안 제10조의20)

- (문제점)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*.

*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기록등위착취 등에 해당 (20.8.27.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)

- **(개선)** 특정금융정보법(§8)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,
 -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,
 -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나.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(안 제9조)

- **(현행)**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,
 - 현행 시행령은 ‘고위험 고객’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.
- **(개선)**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,
 - 금융회사등이 FATF(자금세탁방지기구)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다.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(안 제10조의5)

- **(현행)**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(시행령 제10조의4),
 -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.
- **(개선)**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

3.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('21.6.17.~'21.7.27.) 및 관계부처 협의, 규제위·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 합병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〈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〉

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 - 나. 6촌 이내의 혈족
 - 다. 4촌 이내의 인척
 - 라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 - 마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2.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 - 나. 계열회사 및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 - 다.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(계열회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와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 - 라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